##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12.28] (일부개정) 2023.12.28 조례 제2702호

> 관리책임부서명 : 보건행정과 진료담당 관리책임전화번호 : 055-960-8001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종류 및 기준)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대상포진 1회
- 2. 그 밖에 함양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

**제3조(지원대상)** 선택예방접종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에 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.<개정 2023. 12. 28.>

- 1.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
- 2. 해당연도에 대상 예방접종을 한 경우

제4조(비용지원)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위탁의료기관 선정) 군수는 함양군 보건소(이하 "보건소"라 한다)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하여 「의료법」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을 위탁 할 수 있다.

제6조(접종방법 등) 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 및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.

-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,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.
- ③ 선택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7조(환수조치) 군수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

- 1.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
- 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
**제8조(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)**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 7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예방접종 후이상반응 관리지침」을 준용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<제정 2021. 11. 18. 조례 제258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3. 12. 28. 조례 제270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